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9. 28 선고 2021가단1189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상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변 론 종 결 2022. 8. 24.

판 결 선 고 2022. 9. 2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61,751,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000,000분의 2,470,074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F(2019. 9. 28. 사망)은 2017. 8.경부터 E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왔는데, 2019. 6. 19. E으로부터 2019. 7. 30.까지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받았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E을 상대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차전9966)을 신청하여 2020.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 A, B에게 각 71,428,571원, 원고 C에게 107,142,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20. 1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20. 12. 28. 위 지급명령에 기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G 경매사건에서 88,914,070원을 배당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E의 배우자로 2020. 10. 6. H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3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E이 실제 매수자이나 단지 계약 명의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신탁하여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1) 주위적으로, E과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이 무효일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 E이 지출한 매수자금 61,751,850원을 부당이득한 것이고, (2) 예비적으로, 위 매수자금 상당의 지분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 E은 피고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지분명의 이전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으므로, 각 E의 대위채권자들인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 부당이득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거나, (2) E에게 지분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와 E의 계약명의신탁관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E과의 계약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E의 배우자로 2002. 5. 9.경부터 I(주) 등에 근무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였고, 2014. 3. 17. J회사으로부터 보험금 20,400,000원, 2014. 4. 21. K회사로부터 보험금 20,000,000원, 2014. 6. 3. L회사로부터 보험금 70,594,106원을 수령한 바 있고, 이후 자신의 명의로 펀드나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정기예금을 가입하기도 하였던 점,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무렵인 2019. ~ 2020. 사이에 피고는 2019. 7. 1. M회사 해약환급금 31,766,698원을 수령하고, N은행 정기예금을 3구좌 합계 83,722,891원(= 47,985,636 + 25,099,165원 + 10,638,090원)을 해지하여 자신의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하였고, N은행 수익증권신탁 6구좌 합계 47,919,655원(= 7,537,327원 + 1,578,718원 + 3,071,257원 + 14,670,682원 + 14,718,283원 + 6,343,388원)을 해지하여 같은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 근사한 금액을 마련할 재원이 있었던 점,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도인 H에게 2020. 9. 29. 계약금 200만 원을 피고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이체하고, 같은 해 10. 6. 중도금 1,200만 원(N은행 자기앞수표), 같은 해 10. 7. 중도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0. 22. 2,500만 원은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이체하고, 같은 해 10. 30. 잔금 1억 원을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이체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1억 원은 2020. 10. 30. O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아 지급하였는바, 피고 명의 계좌로 해약금 등을 수령하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에 해당하는 금융자료가 현출된 점, (4) 원고들은 E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 사용한 피고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2008. 11. 8. 4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2020. 9. 28.까지 총 38회에 걸쳐 12년 동안 약 1억 원 이상(61,751,850원+4,19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기간이나 입금 액수, 피고와 E의 관계(부부) 등에 비추어 생활비 등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무렵에는 유의미한 자금의 입금 내역이 없는 점, (5) 일부 E이 입금하여 온 돈이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혼시 부부공동재산 분할에 기여도로 참작하는 것과 별론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부별산제 아래서 그 명의를 불구하고 해당 금액을 지분 명의신탁으로 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진정한 매수인으로 보일 뿐, 달리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진정한 당사자로서 피고에게 그 계약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계약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21층 아파트

지하1층 346.58㎡

지상1층 374.94㎡

2층 390.89㎡

3층 390.89㎡

4층 390.89㎡

5층 390.89㎡

6층 390.89㎡

7층 390.89㎡

8층 390.89㎡

9층 390.89㎡

10층 390.89㎡

11층 390.89㎡

12층 390.89㎡

13층 390.89㎡

14층 390.89㎡

15층 390.89㎡

16층 390.89㎡

17층 390.89㎡

18층 390.89㎡

19층 390.89㎡

20층 390.89㎡

21층 390.89㎡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철근콘크리트조 49.89㎡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군포시 대 42112㎡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42112.0분의 30.86㎡

